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안 1/25-12/25 (전화번호 70-111)	전경규정 3 조 1 항 제 1 부 4 항 전경사항	
처리기간		결재 1979. 9. 24 제 1 부 4 항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생/부서장	검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보건사회국	관	
관	보건행정과	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기안책임자	인양유영 (79. 9. 1 장영덕)	
경유	국안참조	발신	봉
수신		신	비
참조			
제목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 21 회차		
제 1 안	내부 결재 319 호		
<p>1. 조력사역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범행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려 합니다.</p> <p>2. 본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은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시켜 합니다.</p>			
첨부	1.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서 1부.		정서
	2. 조력사 자격시험 위원회 구성 1부.		
	3. 응시요령 1부.		
제 2 안			판인
	보건사회부장관		
	실무/주장		발송
	견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범행 공모문과 같이		

<p>기 보 기 합니다.</p> <p>공고문 1부. 끝.</p>
<p>수신 수신처참조</p>
<p>제목 등 건</p>
<p>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범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시.도 산하에 주저하도록 하여 다수 응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첨부 공고문 각 1부.</p>
<p>수신처 : 나2-11 (참조 : 보건국장),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중학교식업연합회장, 한국조식업협회 중앙회장.</p>
<p>계 4 안</p>
<p>수신 수신처참조</p>
<p>참조 위생국장</p>
<p>제목 등 건</p>
<p>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범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업소 및 관계기관에 주지하여 다수 응시하도록 계몽할 것.</p>
<p>첨부 공고문 각 1부.</p>
<p>수신처 : 서구 1-13.</p>
<p>계 5 안</p>
<p>수신 남대문경찰서장</p>
<p>참조 경비국장</p>
<p>제목 인력경찰관 채용 협조</p>

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로서  
입력 경찰관을 추천 과목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79. 10. 27 - 28 (2일간)

나. 장소 : 보건행정과

다. 제출인원 : 1명. 씩.

제 6 안

수신 한국방송공사 사장

참조 방송국장

제목 등 건

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는바 동시험 내용을 타디오 및 텔레비전용 영공저사함으로써 방송로저의  
리마오나 업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3부. 씩.

제 7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조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추천의뢰 (인과)

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고교  
교수중 다음분야의 전공 교수로 동시험학과 시험위원으로 위촉코저 하오니 각  
과목별 2명씩 다음서신에 기재 '79. 10. 24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자 명부


구분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중증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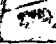
9201-1-43A (2-2)  
1972. 12. 29 승인

4904

190mm×268mm (인쇄용지2급60g/m<sup>2</sup>)  
조판청 (4,000,000여인쇄)

첨부 공고문 각 1부.

수신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식품영양학과)

3.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4. 고려대학교 병선 보건전문대학교

5. 세종대학교 학장. 16

6. 명지대학교 학장

7. 중앙대학교 의학대학장.

8.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장

제 8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실험시험문제 및 실험시험 책임위원 추천의뢰


1. 당식 시행 79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따른 다음 분야에 대한 막식과 영림의 품부안분을 농시험 실험시험문제출제 및 책임위원으로 위촉코져 추천의뢰하오니 각분야별 다음 시식예 의거 '79.10.15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자 명단

과목	구분	근무처	직위	성명	주소	연락번호	비고
안	식						
중	식						
일	식						
양	식						

첨부 공고문 각 1부.  끝.

수신처 : 1.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참조 : 가정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대학장.

<p>1972. 12. 29 서울특별시</p> <p>먼저 대학과 가정 대학 (국가정책 222)</p>
4. 세종대민관
5. 보건전문학교상
6. 고려대학교 신양 기원대학관장.
제 9 관
수신 <b>광양공업 1등 학교</b>
제목 조력사 자격시험 학교 고실 사용 업소 의뢰
1. 당시 시행 1975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내고 고실을 조력사 합격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간 : '75. 10. 28
나. 사용고실수 : 70고실
다. 응시인원 : 약 3,500명
제 10 관
수신 <b>영지씨학교 가정학 과장</b>
제목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고실사용 업소 의뢰
1. 당시 시행 1975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시험장으 로 고고실을 <b>사용</b>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기간 : '75. 11 <sup>월</sup> /18 (월요일)
제 11 관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동 관
1. 당시 시행 1975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감시관을

0201-1-43A (2-2)  
1972. 12. 29 승인

190mm×298mm (인쇄용지2급60g/m<sup>2</sup>)  
표 달 창 (4,000,000에 인쇄)

작성하시거나 내신적인 영인을 다음 서속기 과기 '79. 10. 12'까지 보내야고

2. 내신적인은 시험당일 09:00까지 서면접수 시험본부로 인강 및 공부  
 원종 을 저함 출두하여 본 개소의 서적을 압도록 할것.

가. 시험일시 : '79. 10. 20 (일요일)

나. 장 소 : 한양형 고등학교 (선양동 소재)

다. 보고서식

근무부서	직 명	성 명	비 고

수신처 : 서구 1-19

제 12 안

수신 문화정보관

제목 등 건

1. 당시 시험 79년 조리학 자격시험을 범점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나  
 보도기관을 통하여 널리알려 다수 응시보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요 예산 (공고문 1책사)

나. 제출방법 : (신문공고부 청구액 의수여 회계과에서 지불함)

첨부 공고문 31부. 4.

제 13 안

수신 전산담당관

제목 등 건

가. 79년도 제2회 조리학 자격시험 (약과)을 컴퓨터에 근거 채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일시 : '79. 10. 28 (화요일)

나. 채점의뢰일시 : '79. 10. 28

10. 1907

다. 합격자 발표 : 79. 11. 10 (토요일)

라. 개강인원 : 약 350명

제 14 안

수신 총무국장

제목 조력사 자격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협조 의뢰

1. 단과에서 시행하는 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응시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를 당사 두문초소에서 시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79. 10. 15 - 19 (5일간)

공고일시	1979. 9. 21 제 2608
담당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장소	간접

제 15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오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

1979년도 제2회 조력사 자격시험을 조력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과 의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79.

서울특별시 장 ~~한상환~~

1. 원서배부 및 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79. 10. 15 - 19일 (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원서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두문 (수취실)

3.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기관(시설)의 장이 증명한다

가. 계속사, 학교 병설 기차 무선기관등의 급속시험 또는 공중기관에서 음향물의 조력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한다.

다. 과학시범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교실 등 교실 건물에 과학 시범실 또는 실험실 2개 이상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자
부. 예 3년이상 종사한 사설이 있다고 그 시설과 장비를 증명하는 자.
다.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기능원 강습소 개시 2월 이상 조
터에 관한 강습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라. 교육법과 국가기능원 학교 또는 교육청 기관 기타 법령에 법인이
서적은 인원은 국립보통학교에서 학습 자리에 과학적 학습 20시간 이상 20시간
360시간 이상과 자정을 이수하였다고 대학학교 또는 사설과 장이 증명하는 자.
4. 시험과목
가. 외국사범
식품위생법규 : 식품위생법에 관한 일반상식 : 공중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나. 실기시험 (각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백업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79. 10. 28 (일요일)
나. 실기시험 : '79. 11. 18 (월요일)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당시 소정양식)
나. 자기입부 증명증명 1통 (응시원서 기면)
다. 사진 3매 (3.5cm x 4.5cm) 13월이내 촬영한 참모 상반신 반명함판
라. 수수료 2,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서)
* 응시원서이면 중사자 경력을 증명하였을 때는 일체 접수처 없음.
7. 저참도구
가. 학과시험 : 볼펜 또는 만년필 (침묵식 또는 복수)
나. 실기시험 : 식도, 위생부, 위생모, 양주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4909



- 가. 학과시험 발표 : '79. 11. 10 시험후정 계서판
- 나. 최종합격자 발표 : '79. 11. 24 "
- 3. 응시사유의사항
  - 가. 입안자의 합격자란 단안계 수령기관 또는 지정된 입은 직장남편 부 포함.
  - 나. 79년도 제1회 학과시험 합격자는 79년도 제2회 학과시험기 면제되므로 접수시 실기를 받아 원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원서는 제출하지마함)**
  - 다. 접수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급적 반환하지 아니한다.
  - 라. 기복 상세한사항은 당사 보건의정국에 문의함.

(72-9441, 72-2637)

제 16 안

79년도 제2회 조리학 자격시험 예산결정계획

1. 당해 예산 시행하는 79년도 제2회 조리학 자격시험 실시예 따른 소요 예산 결정계획서에 근거 검토보고서하고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 보건비, 보건마감, 보건행정.

2. 예산내역서 : ~~5,000,000~~ **4,175,000**

가. 기타수당 : ~~100,000~~ **100,000**

- 학과시험출제수당  $10,000 \text{원} \times 3 \text{과목} \times 2 \text{명} = 60,000 \text{원}$
- 실기시험  $5,000 \text{원} \times 4 \text{과목} \times 2 \text{명} = 40,000 \text{원}$
- 감시수당(학과시험)  $3,000 \text{원} \times 160 \text{명} = 480,000 \text{원}$
- 감시수당(실기시험)  $3,000 \text{원} \times 30 \text{명} = 90,000 \text{원}$
- ~~현장 및 관공수당~~  $2,500 \text{원} \times 10 \text{명} \times 2 \text{회} = 25,000 \text{원}$
- ~~현장 및 관공수당~~  $4,500 \text{원} \times 10 \text{명} \times 2 \text{회} = 75,000 \text{원}$
- 출점수당(실기시험)  $50 \text{원} \times 2,000 \text{명} \times 2 \text{명} = 200,000 \text{원}$

나. 일반수용비 : ~~450,000~~ **450,000**

○ 답안지 인쇄 :  $20 \text{원} \times 3,600 \text{매} = 72,000 \text{원}$

○ 분기임대료	10월 × 2,000원 = 20,000원	
○ 용기회생인쇄	10월 × 7,000원 = 70,000원	376,000원
○ 금기회생인쇄	10월 × 7,000원 = 70,000원	446,000원
○ 반격증 인쇄	10월 × 2,000원 = 20,000원	
○ 제공저대	20,000원 × 1회 = 20,000원	
○ 제공품대	30,000원 × 1회 = 30,000원	
○ 시험기구 및 시험자료준반비	14,000원 × 2대 = 28,000원	
<p>박. 수수료 수선비 : 20,000원</p>		
○ 신문공로	1650 × 4번 × 80회 = 528,000원 (부과세 포함)	
<p>마. 재료비 계약 : 2,000,000원</p>		
○ 시험자료기바	1,000원 × 2,000명 = 2,000,000원	
<p>박. 임차료 : 416,000원</p>		
<p><del>총계 및 결산 총계 및 결산 3,000원 × 2일 × 1일 = 6,000원 3,000원 × 2일 × 2일 = 12,000원</del></p>		
○ 약과시험장	3,000원 × 70실 = 210,000원	
○ 실기시험장	3,000원 × 20실 × 2일 = 120,000원	
○ 실기시험기구	1,000원 × 40종 × 2일 = 80,000원	
<p>3. 집행방법</p>		
<p>가. 지방행정사무관목급으로 마어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계 의거 임시전도자금 출납 근무원으로 임명 예산집행하고 사후정산모자입.</p>		
<p>나. 전도자금금 받고저 하는 내역</p>		
○ 기탁수당	95,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11호)
○ 일반수용비	416,000원	" 제48조 2호)
○ 운송비	28,000원	" 제48조 2호)
○ 재료비계약	2,000,000원	" 제48조 5호)
○ 임차료	416,000원	" 제48조 5호)
<p>4911. 다. 일반수용비중 감충인쇄비 376,000원계 대한어는 구 넣음 집행관</p>		



77년도 제 2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서

조리사에 관한 규정 제50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시험인 77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역덕과 같이 실시코자 함.

1. 시험일정

가. 시험실시장고 : '77. 7. 27 (토요일)

나. 응시원서접수 : '75. 10. 15 - 19 (5일간)

다. 학과시험일시 : '77. 10. 28 (일요일)

라. 학과시험결과 발표 : '75. 11. 10 (토요일)

마. 실기시험일시 : '77. 11. 18 (일요일)

바. 최종합격자 발표 : '77. 11. 24 (토요일)

2. 시험장소

가. 학과시험장소 : 한양공업고등학교

나. 실기시험장소 : 영지대학교 자영여학, 가림각학

3. 시험과목

1) 간식

2) 양식

3) 일식

4) 중식

4분야중 선택 1분야

4. 응시자격

가. 계속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농수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나. 조리사로서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유증음식점에서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다. 시설 감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습소에서 3월이상 조리에 관한 감습을 계속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라. 교육법적 규정적 의한 학교 또는 국공립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실

(간부이론) 10점

작은 양의는 국립보고사선에서 직접 조리에 의하여 작곡 20시간 이상 공부하고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믿어 하고 보는 사실의 양의 증명하는 거

5. 응시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75. 10. 15 - 17일 (3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 시청후문 (수괴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통

2) 조리업무 종사증명 (응시원서 기면) 1통

3) 사진3매 (2.5cm x 4.5cm) <sup>동양인화</sup> 재일거주에 촬영된 함포상반신 반

임합관

4) 수수료 (식물특별직 수입증서) 2,000원

\*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정합하는 임제 접수처 없음.

바. 직참노구

1) 학과시험 : 볼펜 또는 단년필 (청담수 또는 흑수)

2) 실계시험 : 식도, 위생부 위생모, 행주

다. 시험표, 교부 및 대조

시험표는 원서 접수시에 교부하고 시험당일 09:30부터 시험장예

시 원서에 접수된 사진과 시험표에 첨부된 사진을 대조 확인하고 상의시험은  
특별조치하여야 하며 시험표는 위상측측 상단계 놓게하여 수시 시험감시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시험하도록 한다. (우편으로 보낼지 응시장에서 보낼지 상의 권유된  
증명서를 지참할 것)

라. 시험시간

1) 학과시험은 시험과목 2과목을 과목당 20문제로 하고 (총 2과목 60  
문제) 전체 시험시간을 90분으로 한다.

2) 실계시험은 분야별 번호순으로 실시하되 09:00 부터 실시한다.

사. 합격자 발표

1) 필계시험(학과) 발표 : '75. 11. 10

4914

2) 적용합격자 발표 : '75. 11. 24

\* 시험후 정제서본에 그 명단 (응시번호도 개입)을 게시 발표한다.

아. 합격증 교부

적용합격자에 대하여 '75. 12. 2 ~ 6 까지 조력사 자격시험 합격 증은 교부하고 번외증 교부 절차를 안내한다.

6. 공고방법

가. 입간신문 1개씩씩 1회 공고한다.

나. 공고안 : 별첨

7. 세입예정액

공고후 응시자 및 합격자 총수에 의거 산출한다.

(응시자수 × 2,000원) + (합격자수 × 1,000원) = 세입액

8.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제16만 참조)

보건비, 보건양상, 보건행정

9. 기타사항

가. 시험문제 난이도 조정에 있어 수정필요 또는 정한 답은 해당답만 무효로 처리한다.

나. 7년도 제1회 조력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7년도 제2회 시험 합격 시험의 면제되므로 접수처에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합격후 합격사유가 발생할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조력사 자격시험 위원회구성(안)

### 1. 명칭

서울특별시 조력사 자격시험 위원회(안)

### 2. 인원

가. 위원장 1인

나. 부위원장 1인

다. 간사 1인

라. 학과시험위원 (각과별) 2인

마.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바. 서기 1인

사. 감독관 (수험고실별) 2인이상

### 3. 구성

가. 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나.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국장으로 한다.

다. 간사는 위생계장으로 한다.

라. 학과시험위원 및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규정 항목자 중 객석 선정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또는 요목계 권위자

2) 조력사종목서 관선자 경험이 풍부한자

마. 서기는 위생계 직원으로 한다.

바. 감독관은 각구 위생자 직원으로 한다.

### 4. 직무

가.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시험위원과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과 및 시·군·자치단체 및 민간의 신청과 자의적 책임을 진다.
- 다. 관서는 시험신청서 처리, 과반준비 및 시험장습을 관리하며 시험감독관 및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감응을 진다.
- 백.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채점을 컴퓨터로 처리시 채점 책임을 면한다).
- 마. 실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바. 서기는 시험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서. 시험감독관의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시험법단체 내부 및 수험생과 부정행위자의 적발 및 제장의 책임을 진다.

#### 5. 시험위원 위촉

관과 및 실기시험 위원은 법저서시에 의거 위촉하며 기타 관계관은 위촉을 생략한다.

#### 6. 시험출제방법

- 가. 위촉받은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30문제를 출제하며, 문제당 1문 30초 이내의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출제를 출제한다 (한력제한없음). 단, 30문제중 소문제는 산부형 (4제산부형), 10문제는 권위형(0, x)으로 출제한다.
- 나. 위촉받은 실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에 대한 시험문제당 30문의내역오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서 시험문제 2편이상종사안자가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범위내이다. 단, 위촉위원 1인당 5문제를 출제한다.

#### 7. 채점방법

-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40문제에 배점은 각5점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고 맞은 답안은 득점으로 계산하며 틀린답의 감점은 없이 당시 컴퓨터에 의거 채점한다. 단, 답안의 개호를 가림하거나 정정합시에는 당해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



다. 설계사업은 위생기술 및 배선으로 구분하여 적임하여 구분야별

100점으로 총합점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직전 위원 2인으로 60점 만점으로 한다.

적임한 위원은

가. 자격시험

- 1) 3과목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공중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총합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 이상 총득점 180점 이상 득야면, 합격으로 하고 11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총득점이 180점 이상 임차라도 과목별로 40점 미만인 과목이 1과목이아로 있을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나. 설계사업

- 1) 설계사업 위원 2인 1조의 제참 (1인당 300점 제참) 총 600점 만점으로 과목당 60점 이상으로 하여 총득점 360점 이상을 득야어야 합격으로 하고 총득점 360점 이상 임차라도 분야별 (위생기술 배선)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9. 프리사 적기시험 위원회 적인 관력

본 위원회의 업무관력 집행에 따른 위원은 과장관급2급의 위원장 1인을 사용하도록 권리한다.

77년도 제2회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요강

1. 원서고부 및 접수기간

'77. 10. 15 - 19 (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원서접수 장소

가.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4층 (수취실)

나. 문의처 : " 보건행정과 (72-5441)

3. 응시자격

가. 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기관(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여야 한다.

1) 계속사, 안고, 병원과 기타 주성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군부대 스킨포럼)에서 음식물의 조리업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는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조리사로서 두어주할 음식점 또는 유통음식점계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3) 시설감소 관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소계서 3월이상 조리 업무 관련 감소를 기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국·공립 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의 설치를 알하는 장외로 시설계서 식품조리 업무 관련 90시간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당해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4.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1) 식품위생법규

2)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3) 공중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 4. 실기 시험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부임

#### 5. 시험관서 및 장소

##### 가. 학과시험

○ 일시 : 10. 28. 10:00 ~ 11:30

○ 장소 : 한양대학교

##### 나. 실기시험

○ 일시 : 11. 1.

○ 장소 : 영리대학 가림터

#### 6. 시험방법

가. 학과시험은 허나그르거 15문제 (선특성)의 각부점가 5문제 (0, x)로 병행하고 답안제 수정, 가필이거나 임의인 답은 채점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

나. 조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시설감소에서 3원기상 조리예 관한 감습이수처 및 고습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국·공립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보도시설에서 식품조리예 관한 학과40시간 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실증명 (원서부록)

다. 사진 3매 (3월이내 촬영한 <sup>원인용</sup> 반모상반신 반명함판 3.4센치 × 4.5센치)

라. 수수료 2,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마.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증명하였을지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8. 합격자 발표

가. 학과시험합격자 발표 : '79. 11.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실기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 '79. 11. 24 "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00까지 출두 09:3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 시험용 주의사항을 정확  
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 입실후의 시험장 입장은 일체 불허한다.

다. 지침도구

1) 학과시험 : 볼펜, 또는 만년필 (복, 흰색)

2) 실기시험 : 의도, 위생부, 위생모, 양주.

10. 기탁사항

가. '79년도 제1회 시행 당시 초역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79년도 제2회  
시행 학과시험에 연계되므로 접수처에 확인을 받아 입시를 접수하  
여야 한다. ~~응시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합격후 합격사유가 발생일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